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58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김현정 · 박해철 · 김동아
이성윤 · 황명선 · 박홍배
박정현 · 임오경 · 문정복
최민희 · 김문수 · 박지혜
이소영 · 채현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 또한 1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42조의7 및 제542조의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를 “상장회사는 제3항 및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로 한다.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u>제2항의 상장회사가</u>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u>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u> ④ 제2항의 <u>상장회사가</u>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상장회사가</u> ----- ----- ----- ----- ----- ----- ----- -----. <u><단서 삭제></u> ④ ----- <u>상장회사는</u> 제3항 및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